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46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강명구 · 임종득 · 조지연
임이자 · 신동욱 · 김미애
성일종 · 조은희 · 서지영
엄태영 · 윤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사·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7조제2항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교육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25.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6.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27.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28.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29. 건성습진(乾性濕疹)
30. 뇌경색증(腦硬塞症)
31.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32.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33. 근질환(筋疾患)
34.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5. 고혈압(高血壓)
36. 뇌출혈(腦出血)
3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3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39. 고지혈증(高脂血症)
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礙)
41.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악성종양(惡性腫瘍)
4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문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5부터 제7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의5제1항제1호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중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한다.

제8조의7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다음”으로, “영향”을 “영향(고엽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을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으로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을 각각 “고엽제후유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6호의2·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89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u>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u> 및 <u>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고엽제후유의증환자</u>”란 <u>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u></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 ----- ----- ----- -----<u>고엽제후유증</u>----- -----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 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고엽제후유증환자-----

-----.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⑥ (생략)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고엽제후유증-----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

-----.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5. (생략)
-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 2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단서 삭제>

17. ~ 24. (현행과 같음)

25.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6.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27.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28.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29. 건성습진(乾性濕疹)

30. 뇌경색증(腦硬塞症)

31.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32.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33. 근질환(筋疾患)

34.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礙).

35. 고혈압(高血壓)

36. 뇌출혈(腦出血)

3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3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39. 고지혈증(高脂血症)

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礙)

41.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악성종양(惡性腫瘍)

4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1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삭 제>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삭제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삭제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⑤ (생략)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 ③ (생략)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

③ (현행과 같음)

④ -----

-----고엽제후유증의-----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1.·2. (생략)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③ -----

-----고
엽제후유증환자-----

- 1.·2. (현행과 같음)
3. -----고엽제후유증-----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의료기관

④ -----
-고엽제후유증환자-----

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

-----고엽제후유증환자-----

⑤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⑥ (현행과 같음)

⑦ -----
-----고엽제후유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삭 제>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삭 제>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

<삭 제>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
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
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
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
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
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
용한다.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제7
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삭 제>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

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삭 제>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삭 제>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 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

<삭 제>

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

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4조 및

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삭 제>

<삭 제>

<삭 제>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생략)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1. -----고엽제후유증환자-----

2. (현행과 같음)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

원금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 ④ (생략)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
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
-----고엽제후유증-----

1. ~ 3. (현행과 같음)

② -----고엽제후
유증-----

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고엽제후유증------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
-----다음-----

-----영향(고엽제

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 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

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포함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생략)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1. -----
-고엽제후유증-----

2. -----고엽제후유증-----

3. (현행과 같음)
<삭 제>

<p>5. <u>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u></p>	<p><삭 제></p>
<p>6. <u>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u></p>	<p><삭 제></p>
<p>6의2. <u>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u></p>	<p><삭 제></p>
<p>7. <u>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u></p>	<p><삭 제></p>
<p>7의2. <u>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u></p>	<p><삭 제></p>
<p>8. ~ 11. (생략)</p>	<p>8. ~ 11. (현행과 같음)</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2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p>	<p>제32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엽제 후유증환자</u>, <u>고엽제후유의증환자</u> 또는 <u>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 -----<u>고엽제 후유증환자</u>----- ----- ----- -----.</p>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생략)

②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삭 제>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5. (생략)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삭제>

<삭제>

<삭제>

4.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